

## 제2절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민의 생활\*

### 1. 농지소유와 농민층의 분화

17세기 이후 조선의 농촌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지소유 관계의 변화와 여기에 따른 농민층의 분화였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농업발달에 바탕을 두면서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 농업발달은 농업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한 생산력의 발전이었고, 이것은 이양법(移秧法)의 보급과 확산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양법이 보급되기 전에는 논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 직파법(直播法)이 일반적이었으나, 모판에서 모를 가꾸어 본논에 옮겨 심는 이양법의 보급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김매는 품도 절감되었으며, 벼와 보리의 이모작(二毛作)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체로 이양법은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반밖에 안 들고, 수확량은 그와 반대로 배가 되었으며, 종자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직파를 하면 지면에 떨어지는 종자의 간격이 불규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과다하게 뿌려져서 낭비가 많았던 것인데, 이양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면할 수 있었다.<sup>1)</sup>

이양법의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의 공급이 원활해야 하므로 수리시설이 절실하게 되었다. 직파법에서는 물이 있으면 수파(水播)를 하고 물이 없으면 건파(乾播)를 하여 파종기의 물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양법에서는 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는 이양법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양법은 그 자체의 이득뿐만 아니라 보리와 이모작이 가능하였고, 중경제초(中耕除草)와 그밖의 노동에서도 많은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양법은 점점 보급되어 숙종연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양법의 전면적인 보급에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양의 실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이양에 적합한 종자의 개량과 보급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수리(水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모아졌다. 수리문제는 수차(水車)의 보급도 논의되고 있었지만, 최선의 방책은 제언(堤堰)이나 보(洑)의 축조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제언사의 복설(復設)문제가 빈번히 논의되었고, 제언이나 보 시설이 적극적으로 수축 또는 신축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사정과 함께 순천에서도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일찍부터 수리시설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리시설은 곧 이양법의 보급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읍지인 『충평지』에 등재된 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이사(下伊沙)

3곳

\* 제2절은 정진영(鄭震英) 집필임.

1) 김용섭, 「이양법에 대하여」, 『조선후기 농업사연구』2, 일조각, 1970.

해 촌(海 村)	1곳
서 면(西 面)	1곳
천 방(川 坊)	6곳
서 면(西 面)	1곳(辛酉築堰)

제언을 통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앙을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나갔고, 이것은 농업경영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이앙을 통한 노동력의 절감은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廣作)을 가능케 하였다.

최근 수십 년간 이앙법이 전국에 성행한 뒤에 땅을 가진 자들은 노동력이 절약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 모두 자경(自耕)을 하기 때문에 무토자(無土者)는 입작(入作)할 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淸정원일기, 숙종 20년 7월 27일)

이와 같이 이앙법의 보급에 따른 노동력의 절감은 농민층에게 광작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 계층들은 치열한 경작경쟁을 벌였다. 광작을 실시하기 전에는, 지주들은 경작하고 남은 토지를 소작지로 대여해주었는데, 광작 이후에는 그 대여지를 자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농민층은 이제 광작자와 무전무전민(無田無佃民)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직과를 할 때는 역농자(力農者)라도 많아야 3~4섬지기의 땅을 경작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토(田土)가 많은 이는 반드시 병작(並作)을 주어야만 했다. 그런데 한번 이앙이 실시된 후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농민은 병작조차 얻을 수 없어 그 폐가 크다.( 晦변사등록, 영조 7년 8월 24일)

열 집이 모인 곳에서도 땅이 있는 자는 한둘이 되지 않는다. 절반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리고 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힘써 일하여도 상세(常稅)를 바치는 데에도 모자라는데 그 절반을 땅 주인에게 바치고 또 공사채(公社債)에 응하고 있다.( 淸宗실록, 경종 원년 신축 9월 갑오조)

이앙법의 보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 분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고, 이에 일정한 토지를 보유한 소농민은 자급자족의 상태에서 벗어나 단순상품생산자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각지에는 정기시장인 장시가 활발히 개설되었다.<sup>2)</sup>

또한 농업생산량의 발달에 따른 수확량의 증가는 그것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유발하였다. 농촌사회는 점차 상품화폐경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상품화폐경제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농민들은 몰락해갔다. 또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17세기에는 지주층이나 부농층의 신진개발과 토지집적이 진전되고, 인구팽창에<sup>3)</sup> 따르

2) 순천부에 개설된 장시와 장이 서는 날을 보면 다음과 같다.( 淸평지』장시조 참조)

邑內(5·10일 → 新增 : 2·7일), 廣川(5·10일 → 壬戌新增 : 3·8일), 石堡(신증 5·10일), 海倉(3·8일 → 임술신증 : 4·9일), 成生院(4·9일 → 임술신증 : 今屬麗水), 富有(임술신증 : 今廢), 雙巖(임술신증 : 금폐), 槐木亭(4·9일 → 임술신증 : 4·9일), 銅店(임술신증 : 금폐), 大谷(1·6일 → 임술신증 : 금폐), 洛水(1·6일)

3) 순천부의 호구수는 元戶 3,587호 口數 1만 2,319구(남 5,839, 여 5,900)에서 新增戶는 1만 4,318호, 구수 4만 5,070구(남 2만 5,019, 여 2만 5,01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기준연도가

는 경지 부족과 편중 등의 요인으로 농민층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조선 전기에 소토지를 경작하였던 자작농과 소작농 가운데 당시의 상품화폐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토지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부농(富農)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자는 빈농(貧農)으로 전락해가는 농민층 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sup>4)</sup>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한 특질은 이러한 농민층 분화현상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의 집중화와 토지경영의 집중화현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토지소유의 집중화현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양법의 보급에 따른 광작으로 일부 부유층은 대토지를 집적하였고 대부분의 농민은 영세한 토지소유자나 무전농민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정을 18세기 초반 경상도 의성과 상주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물론 의성과 상주의 사정이 곧 순천의 사정과 동일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그 대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초반 의성과 상주지역의 계층분화

(단위 : % · 명)

구분 \ 지역	기준소경	기주 백분비(기주수)		소경 백분비	
		의 성	상 주	의 성	상 주
부 농	1결 이상	11.5(77)	10.5(121)	40.9	42.7
중 농	50부 이상	17.3(116)	19.3(221)	28.4	30.8
소 농	25부 이상	19.6(131)	18.8(215)	16.7	15.2
빈 농	25부 미만	51.6(346)	51.4(589)	14.0	11.3
합 계		100(670)	100(1,146)	100	100

출전 :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연구』1, 일조각, 1970.

여기서 부농층은 대체로 1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이고, 1결 미만 50부 이상은 중농층, 50부 미만 25부 이상은 소농층, 25부 미만은 빈농층으로 볼 수 있겠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지역에서는 대략 10% 정도의 부농층이 40% 이상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70%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겨우 30% 의 토지만을 소유한 소농과 빈농이었다. 그리고 20% 미만의 중농층이 30% 내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즉, 농지소유에서 계층분화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격심해지고 있었다. 순천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를 부사인 황익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순천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부유하여 본래 살기 좋은 곳이라 일컬어졌으나 명실이 크게 다르다. 능히 부요(富饒)로 부를 만한 집은 그 수가 약간에 불과하다. 땅은 광대하고 인구는 많으나 동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고, 서북쪽은 산에 접해 있어서 가히 경작할 수 있는 곳은 10의 2, 3도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양전미답(良田美畓)은 궁가(宮家)의 소유가 아니면 사부(士夫)의 가정(家莊)이니 토착의 백성은 가히 경작할 토지가 없고 토지를 경작하려면 타인의 땅을 빌려야 한다.(황익재, 『화재집』, 論邑弊九條)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인구증가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4)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연구』1, 일조각, 1970.

즉, 능히 부요로 부를 만한 사람은 약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몰락농민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바다에 연해 있고 산에 접해 있는 자연지리적인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궁가와 사부가에서 양전미답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앞의 표에서 보이는 부농의 상당수는 기존의 봉건적 특권을 누리고 있던 양반이었고, 소농과 빈농의 대부분은 평민과 천민이었지만, 당시 조선사회는 신분과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일치하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즉, 양반 가운데서도 몰락하여 소·빈농으로 전락하거나, 평·천민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부농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다음에서 양반과 평·천민층의 계층분화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 초반 양반층의 토지소유 현황

(단위 : % · 명)

구분 \ 지역	기주 백분비(기주수)		소경 백분비	
	의 성	상 주	의 성	상 주
부 농	18.4(27)	23.4(52)	55.7	76.6
중 농	17.7(26)	22.1(49)	21.8	19.7
소 농	19.7(29)	16.7(37)	13.0	7.7
빈 농	44.2(65)	37.8(84)	9.5	6.0
합 계	100(147)	100(222)	100	100

출전 : 김용섭, 『조선 후기 농업사연구』1, 일조각, 1970.

18세기 초반 평민·천민층의 토지소유 현황

(단위 : % · 명)

구분 \ 지역	기주 백분비(기주수)		소경 백분비	
	의 성	상 주	의 성	상 주
부 농	10.7(49)	7.4(69)	35.2	31.9
중 농	19.9(90)	18.6(172)	32.8	30.8
소 농	20.6(102)	19.3(178)	18.0	19.0
빈 농	48.8(281)	54.7(505)	14.0	18.3
합 계	100(522)	100(924)	100	100

출전 : 김용섭, 『조선 후기 농업사연구』1, 일조각, 197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양반 중에서도 20% 내외를 제외한 50~60%는 소·빈농이었고, 평·천민 중에서도 10% 정도는 부농층이었으며, 양반이든 평·천민이든 간에 대부분의 농민은 그들 자신들의 토지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검토관(檢討官) 권적이 아뢰었다. 신(臣)이 남쪽으로 향하였는데,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유산(流散)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김제의 고씨(高氏) 성을 가진 선비가 주립을 이기지 못하여 부처(夫妻)가 장차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처가 말하기를 “이 같은 참혹한 흉년을 만나서 이제 장차 빌어먹게 되었으니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러 돌아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에 기르던 개가 있으니 청컨대 당신과 함께 잡아 먹읍시다.” 지아비가 이르기를 “나는 내 손으로 차마 잡아 죽일 수가 없구려.” 지어미가

이르기를 “내가 부업에서 개의 머리에 끈을 맬 것이니 당신이 밖에서 잡아당기시오.” 지아버가 그 말대로 하고 들어가보니 개가 아니라 그 처이더랍니다. … 임금께서 측연해 하시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淸宗 실록, 경종 원년 9월 기미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과 경제적 기반이 이미 일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양반의 이러한 사정은, 더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평·천민층의 생활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신분과 관계없이 이들 절대다수의 영세농민은 생계를 위하여 부농층의 토지를 차경(借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들 영세농민들은 부농층의 토지 차경도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의 계층분화는 토지의 경작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었다. 다음은 경작관계에서 계층분화를 살펴본 것이다.

민유지 경작에서의 계층분화

(단위 : % · 명)

구 분	기준소경	기주 백분비(기주수)	소경면적 백분비
부 농	1결 이상	3.0(13)	29.6
중 농	50부 이상	7.8(34)	18.5
소 농	25부 이상	14.1(61)	24.6
빈 농	25부 미만	75.1(326)	27.3
합 계		100 (434)	100

출전 : 이영훈, 「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29, 198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3%에 불과한 부농이 30%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반면에, 90%에 가까운 소·빈농이 50% 정도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다. 이것은 농지소유에서 광범한 소·빈농층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소·빈농층은 한편으로는 지주층에 대하여 항조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그들 내부에서는 토지경작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같은 토지경작을 둘러싼 대립의 원인은, 토지는 적은 데 반해 소작지를 필요로 하는 소·빈농층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주는 당연히 건실한 소작농민에게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소작관계를 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순천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소작농민들 사이에 치열한 차지경쟁(借地競爭)이 전개되었다. 다음의 사정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가운데 양전미답(良田美畓)은 궁가(宮家)의 소유가 아니면 사부(士夫)의 가莊(家莊)이니 토착의 백성은 가히 경작할 토지가 없고 토지를 경작하려면 타인의 땅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공짜로는 빌릴 수 없고, 얻는 데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자를 기다려서 허락하는 까닭에 답주(畓主)의 조종에 토지를 차경하기 위한 자들의 쟁단이 분운한데, 이들의 대부분은 빈천한 사람들이다. 값을 주고 땅을 얻으니 여기에 든 비용이 이미 많아 농량(農糧)과 농우(農牛) 또한 구비할 수가 없다. 미리 추수의 수입을 담보로 삼는 까닭에 비록 풍년을 만나더라도 추수한 수확의 반은 땅주인의 창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간다.(황익재, 화재집 권2, 논읍폐구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주들은 소작지를 대여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값을 지불하는 소작농에게 소작지를 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일정한 자작지를 소유하고 있던 말하자면

요호부민층에게 더 많은 소작지가 대여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무전농민은 소작지를 얻기도 어려웠고, 이미 가을의 수확물을 담보로 사채를 얻었기 때문에 풍년이 되어도 생계가 막연할 뿐이었다. 여기에 흉년이 겹치거나, 세금 징수가 가혹하게 추진될 때 궁핍한 백성들은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빈궁한 농민들은 공사채의 폐해를 크게 입고 있었다. 급채자(給債者)들은 농민이 다급할 때 빌려주고는 월리(月利)든 연리(年利)든 그들 마음대로 약속하고, 받을 때는 돈이나 곡식의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여 5~6배의 식리(息利)를 취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채는 오래되어 이자가 본전이 되고, 이것이 또 이자를 만들어 농민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무력한 농민이 관청에 고발하고자 하여도 이들의 위세와 앞으로 빌려쓸 길이 막힘을 두려워하였고, 관가에서 이를 적발하여 금단하고자 하나 부호들의 횡포를 두려워한 농민들의 비협조로 어려운 실정이었다.<sup>5)</sup> 농민은 이러한 공사채와 각종의 세금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더욱 고통스러울 따름이었다. 부사 황익재는 순천민의 이 같은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더욱이 근년 이래로 흉년이 겹쳐 소출이 전혀 없어 오직 부채만 짊어진 궁색한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은 바로 사채 때문이다. 금년 농사가 비록 사소한 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풍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민간의 형세가 가히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겨울과 봄의 사활은 오직 공사채에 달려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포흠(逋欠)과 각양의 신평(身布)을 모두 거두는 것을 정지해달라.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흠을 독촉함이 이미 급하고 기타 여러 요역이 수도 없이 많아 비록 그 집에 들어오는 수입을 다 바쳐도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은 가히 논할 바가 못 되어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고 모두가 흠이질 생각만 갖고 있다. 옛 사람들이 풍년이 흉년보다 못하다고 하였으니 실로 오늘날 민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황익재, 화재집』 권2, 논읍폐구조)

궁핍한 백성들이 오직 각양의 공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흉년만이 아니라 풍년을 당해서도 세금과 요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각양의 세금과 공사채를 당분간 거두지 않는 일뿐이었다. 당시의 순천부사는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사또께서 이러한 형세를 살피시어 각 년의 묵은 환곡(還穀)은 우선 거두는 것을 정지하고, 북한산(北漢山) 상환미(償還米)와 여러 궁가(宮家) 유진(留賑) 곡물도 신평(辛卯) 계사(癸巳) 양년의 예를 참작하여 거두는 것을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황익재, 화재집』 권2, 논읍폐구조)

조선 후기 농민층의 실상은 바로 이 같은 농민층의 분화라는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에 봉건지배층의 부세수탈과 거둬지는 재해는 농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비단 토지소유와 경작관계만으로는 순천민의 생활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 순천민에게 더욱더 고통이 되고 있었던 것은 군정과 공방, 각 아문의 절수문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엉키고 설키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었다.

5) 조원래, 「18세기초 순천부의 지방행정동태」, 탐도문화연구』1, 순천대, 1985.